

예 산 총 칙

2011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30,142,085	12,904,263
일반회계	301,245,084	9,037,353
특별회계	128,897,001	3,866,910
기타특별회계	128,897,001	3,866,910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1,106,362	33,191
주차장특별회계	72,424	2,173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844,550	55,337
주택사업특별회계	89,655	2,69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10,109,209	3,303,276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206,102	6,183
치수사업특별회계	1,192,857	35,786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504,221	15,127
기반시설특별회계	84,682	2,540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특별회계	13,686,939	410,608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427,273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지방재정법 제47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재무활동경비,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정책사업간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은 상호 이용 할 수 있다.